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00017(본소), 2020가단10002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여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희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우기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28.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아울러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8년경부터 ‘C’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2018. 3.경 ‘D’을 운영하는 E(F)을 통해 그 사실혼배우자인 피고를 알게 되었고, 법사임을 자처하는 피고에게 부탁하여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나. 관련 형사판결

1) 피고는 2018. 7. 중순경 원고에게 “항아리에 돈을 쌀과 함께 넣어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리면 장사도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해진다.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기도를 드리고, 100일 후에는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의 공장운영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0일 후에 이를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받고, 2018. 8. 4.경 피고 명의 계좌로 404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9. 4. 2. 02:00경 C 내에서, 원고가 E에게 ‘피고에게 10,040,000원을 주고 성폭행 당했다.’라는 말을 한 것을 따지기 위해 원고를 찾아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시미 칼로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3) 위와 같은 일로 원고는 피고를 사기 및 강간, 협박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중 강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원고도 강간을 당하였다는 확정적 인식이 없는 점으로 보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2. 26.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사기 및 협박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757호 사건에서 2020. 9. 10. 위 1), 2)항 기재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에게 징역 8개월 등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20노2222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등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 10 내지 12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사기로 인하여 원고는 10,040,000원을 편취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협박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협박의 경위와 방법, 원고와 피고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00만 원(=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1,000만 원 +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말경부터 2018. 7. 2.까지 합계 7,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7,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강간으로 고소하는 등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를 무고하여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상계 후 남은 차용금과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의 대여금채권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8. 7. 2.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18. 8.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3, 7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말경 E으로부터 현금으로 빌린 4,000만 원, 2018. ○6. 중순경 거래업체 사장 G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물품대금 2,000만 원, 2018. 7. 2. 피고가 보유 중이던 현금 1,000만 원을 빌려주어 합계 7,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을 제3, 4호증(사실확인서)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은 피고의 사실혼배우자인 E이 작성한 것이고, 을 제4호증은 G이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는 제3자(H)가 작성한 것으로서, 작성자와 피고의 관계, 작성된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증서에 따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될 때까지 원고에게 대여금의 변제 또는 차용증서에 따른 이자 지급을 요구한 바 없었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중순경 지급한 1,000만 원의 반환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7,000만 원의 대여금은 언급하지 않은 채 집을 팔아서라도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의 태도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위 차용증서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장에 1이 여러 명을 데○려와 도박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도박에 참가한 사람 5~6명에게 도박자금으로 1억 원 가량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가 자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자신이 원고의 채권자 지위에서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대신 추심해주겠다고 하여 2018. 8. 31.경 대여일을 2018. 7. 2.로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원고는 2018. 7. 27.부터 1에게 여러 차례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다가 2018. 8. 31. 친구 신랑에게 갚기로 약속했다고 하면서 피고와 작성한 차용증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며 변제를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차용증서 원본 2장을 동시에 작성하여 1장씩 나누어 가졌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차용증서는 원고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피고와 협의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위자료채권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를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원고도 강간을 당하였다는 확정적 인식이 없는 점으로 보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고, 강간에 대한 불기소처분 후 수사기관에서 원고를 무고죄로 인지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피고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대여금채권 및 위자료채권을 전제로 한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날인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송현